

의안번호	2219133
의 퇴 인	배준영의원
회 답 일	2026. 6. 25.
추 계 번호	26B2763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4조(자동차의 튜닝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 ¹⁾ 에 따른 고령운전자 안전 튜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(제5항 신설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4조(자동차의 튜닝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안 제34조(자동차의 튜닝) ④ 자동차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튜닝(이하 “고령운전자 안전튜닝”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.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참고로,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²⁾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음

[표 1]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보급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 내용	예산('26)
교통사고예방지원 (첨단안전장치 보급 사업)	○ (첨단안전장치 보급 사업) 고령 운수종사자(택시·소형화물) 대상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구매 및 설치비 지원 － (대상)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(1.4톤 이하) 운수종사자 － (사업규모) 3,260대(2026년 지원 대상) － (지원율) 법인 50%(20만원), 개인 80%(32만원)	1,000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경우, 현행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보급 사업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향후 실시될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 및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며, 개정안은 고령운전자 안전튜닝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2)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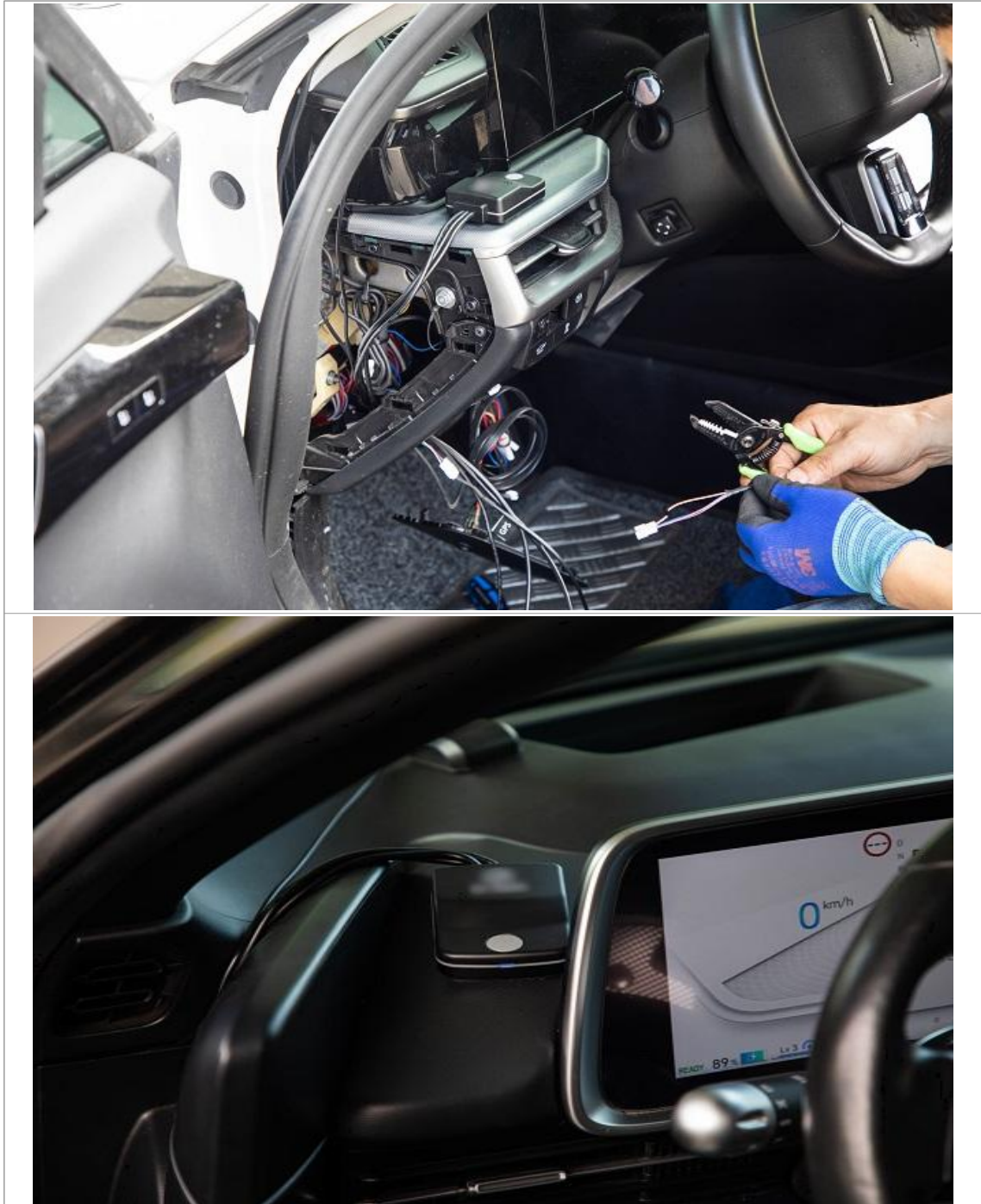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

[참고자료]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사진

(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³⁾ 참조)



주: [사진설명]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및 장착 사진(페달 오조작 시 빨간불과 소리로 신호를 주며, 가속을 제어)

3) 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, 'TS, 경찰-손보 협력, 고령운전자 안전 운전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2차 사업 본격 시행', 2026.5.20.